

<기자회견문>

선원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별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 규탄,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대법원 판결을 촉구한다

2023. 10. 20.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산재보상급여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면서 외국인 선원은 내국인 선원과 다르게 처우할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서울고등법원 2023. 10. 20. 선고 2021누59610). 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국적을 이유로 법정근로조건, 즉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놓은 것이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베트남 국적의 N씨는 어선에서 꽃게, 대게, 오징어, 새우 등을 잡는 일을 했다. 배를 타면 바다에서 5-6일 정도 조업 후 육지에 와서 어획물을 판매하고 다음날 새벽에 다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5-6일 정도 조업하는 것을 반복하였다. N씨는 조업 나갈 때 하루 6시간 정도의 수면시간을 제외하고 거의 쉬는 시간 없이 일했다. 휴일은 따로 정해지지 않고 기상악화로 선박출항이 불가능한 경우 쉴 수 있다고 했으나 부상당하기 전 약 1달의 근무기간 휴일을 가져본 적이 없다. 2020. 5. 4. N씨는 오전 7시 고기잡이 그물의 쇠줄을 감는 작업을 하던 중 쇠줄에 손이 감겨 우측 견갑골 골절, 우측 엄지 절단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N씨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을 운영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산재보상급여를 청구했는데 수협은 월 1,862,240원을 승선평균임금으로 적용하여 급여를 산정하였다. 그런데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에 따르면 선원 최저임금은 월 2,215,960원이고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최저액은 월 4,583,140원이다. N씨가 적용받은 승선평균임금이 법령에 따른 어선원 재해보상 승선평균임금 최저액의 절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함은 물론, 선원 최저임금에도 수십만원 미달하는 수준이었던 것이다. 이에 N씨는 재해보상급여가 잘못 산정되었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N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N씨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외국인 선원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주어선원 최저임금 차별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주된 이유는 이주어선원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사용자는 숙식과 송환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임금 산정 시 이러한 비용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표준근로계약서는 국가정책으로 추진된 외국인력도입제도에 따라 이역만리 타국에서 어선원으로 일하기 위해 한국에 온 선원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그리고 실제로는 이주노동자들이 부담하는 막대한 송출비용, 여권 등 신분증 압수, 열악한 숙소, 임금체불, 산재 등의 숭한 인권 및 노동권 침해를 막지도 못하는 장

치인데, 이를 이유로 법정근로조건인 최저임금 차별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한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게다가 선원 최저임금 고시는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의 '공정한 구인을 위한 원칙과 지침'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구인에 소요되는 비용과 여행경비를 포함한 관련 비용은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즉 숙식비는 관련 법령상 최저임금에 산입해서는 안 되고, 송환비용은 사용자가 마땅히 부담해야 하는 것임에도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이유로 최저임금조차 적용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고용 및 근로조건에서의 차별은 차별을 받는 집단을 경제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이게 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같은 노동시장에 속하거나 진입하려고 하는 다른 노동자들의 협상력, 경쟁력과 근로조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선원법 제5조에 의해 준용되는 근로기준법 제6조가 성, 국적, 신앙과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근본적 이유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그 동안 수차례 헌법과 노동법의 근간을 이루는 위와 같은 법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3627,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2050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등 참조).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은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에게만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법을 저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아직 희망은 남아 있다. 같은 쟁점으로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들이 있고(그 중 서울행정법원의 한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한 상황이다),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된 상황이다. 마침내 법과 원칙을 확인해주는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

2023년 12월 1일

연명단체 일동

공익법률지원센터 파이팅챌스, 난민인권센터, 대경이주연대회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경주이주노동자센터, 나오미센터, 성요셉노동자의 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와 인권연구소), 아시아의 창,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IW3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

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
살롱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
성인권센터, 한삶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
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
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
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
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
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
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
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법률지원센터 모모, 한국이주인권센터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발언문>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주노조 위원장 우다야 라이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하는 임금을 평등하게 받아야 합니다. 한국에 와서 피땀을 흘리면서 일 하고 있고 같은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주노동자 없이 한국 농어업 제조업 등 여러 산업이 굴러갈 수 없습니다. 한국인 노동자의 빈자리에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3D업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산업현장에서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합니다. 힘들어도 쉬지 못합니다. 아파도 병원 가지 못합니다. 사장 폭행 폭언 끊이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이주노동자들을 자신들 맘대로 일 시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기계라고 생각합니다. 어선에서 일하는 선원 노동자의 근로조건도 아주 열악합니다. 배에서 내리지 않고 며칠씩 일해야 되고 어선주의 괴롭힘도 감내해야 합니다. 선주들이 여권을 압류하고 선원노동자의 안전 휴식 보다는 자신의 이익만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이런 사업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노동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들도 사람이고 노동자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이주노동자 정책, 사업주의 이주노동자의 대한 차별과 착취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너무나 힘들게 노동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에서 일 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연장근로수당 받지 못합니다. 농어업 비롯해 다른 업종에서도 임금 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이 한해 1200억 넘었습니다. 힘들게 일 해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신고해도 사업주가 벌금낸다고 버티면 그만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고등법원에서는 외국인 선원은 내국인 선원과 다르게 처우할 합리적 근거가 있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주노동자가 위에 말한 상황들을 겪으며 차별과 착취에 시달려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주노동자가 내국인보다 나쁜 처우 받아도 되고 최저임금 적게 받아도, 임금 차등적용 받아도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또 고등법원이 사회구성원이 모든 권리 누릴 수 있게 합리적인 판결을 해야 하는 법원이 이런 인종차별적인 판결해도 되는 겁니다. 이주노동자 권리 제한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임금 적게 받아도 된다고 하는 판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 언제까지 이 땅에서 차별 받아야 합니까. 대통령까지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발언 할 수 있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은 수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만큼은 이주노동자의 임금 제대로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판결을 해야 합니다.

<발언문>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춘기 소장

1. 한국은 2023년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에서 2022년에 이어 2등급국가로 지정되었다. 노동착취인신매매(강제노동)부문에 만연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의 보고가 없었다는 점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 왜 한국정부는 강제노동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

2. 2023년 경주이주노동자센터에서 접수 진행하고 있는 선원이주노동자 상담 중 20톤 이상 선박 E-10-2선원 사건은 35건이다. 이중 여권, 등록증, 통장을 모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사례는 단 6건에 불과하다. 26건은 여권을 포함한 압류, 3건은 통장만을 압류하고 돌려주지 않은 사례이다.

본인이 여권등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6건의 사례중에서도 3건의 사례는 계약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본국으로 귀국을 결정해 돌려받은 사례이다. 이들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퇴직금을 받지 못해 비행기 티켓 값도 포기하고 강제단속의 위험도 무릅쓰고 센터로 상담 온 것이다.

3. 경주라는 아주 시골에 있는 우리센터에서 진행하는 선원이주노동자상담만으로도, 어떤 이유에서든 여권 등을 압류해 이주선원노동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알 수 있다.

선주와의 협의에서 해결되지 않아 수산청에 진정을 접수한다. 이때 체불임금과 함께 반드시 포함되는 내용이 압류된 여권, 등록증, 통장의 반환요구다. 반환하지 않는 선주들에 대한 처벌받은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올해 여권을 돌려받은 사례는 4건이 전부다.

4. 우리센터에 상담을 오는 이주선원들은 인천, 여수, 제주, 통영, 거제, 사천, 태안, 포항, 영덕, 강구등 어업을 행하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온다.

이주선원노동자들이 지역을 불문하고 여권 등을 압류당하고 장시간노동, 휴일 없는 노동, 저임금노동을 강요받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여권압류에 대한 심각성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통장압류 등록증 압류도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수많은 장벽중 하나가 된다.

5. 압류사례중 월급이 제때 나오지 않아 배를 바꾼 사례가 있었다. E-10선원들은 선박을 바꾸려면 선주의 동의를 필요하다. 여권과 등록증을 압류하고 있는 선주의 동의? 이 두명의 선원은 여권과 등록증은 돌려받았지만 수협은행 통장은 선주가 돌려주지 않았다. 당연히 이 선원들도 퇴직금이 체불되었다. 선원들은 임금명세서도 없다. 근무시간을 기록한 어떤 근거도 없다. 오로지 통장기록만 이 배에서 근무했고 급여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행히 선원들은 통장 사진을 찍어두고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입

력해 두었다.

6. 사천에서 배를 탄 선원이주노동자의 사례는 4년 5개월을 일하고 계약만료를 앞두고 본국 귀국을 선택했다. 매일 새벽2시에 출항해 오전 9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멸치를 잡았다. 휴어기에 본국으로 휴가 한번 없이 어장막(멸치가공 공장)에서 일했다. 휴일 없이 일하고 너무 힘들어 그만뒀다고 했다. 결국 통장은 돌려받지 못했다.

이 노동자도 당연히 1년치의 퇴직금만 받았다.

5월에 센터를 방문한 이 노동자는 사진으로만 있는 통장의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해 급여입금내역을 확인하지 못했고 기억해낸 후 다시 상담하기로 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하기에 공장에 일을 시작했고, 7월 출입국 강제단속으로 강제출국당했다. 면회를 간 나에게 한 말이 '선주 사모님은 비밀번호 알아요!'

7. 통장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면 은행을 방문해 바꾸어야 한다. 이번에는 통장과 등록증을 요구한다. 통장을 개설할 때 등록증으로 개설했기 때문에 등록증 없이는 비밀번호를 수정해 줄 수 없다고 한다.

여권 등의 압류는 강제노동뿐 아니라 체불된 임금을 받기위한 과정에서도 선원이주노동자에게 수많은 좌절을 안긴다.

8. 선주들은 여권, 등록증, 통장 등의 압류사실에 대해 출입국업무, 은행업무, 분실우려 심지어는 솔직하게 이탈방지를 위해 압류한다고 말하는 등 댈 수 있는 모든 이유를 낸다.

선주들이 말하는 핑계는 모두 이주노동자 스스로 해야 할 사적인 생활이다. 최소한의 사적생활도 허용되지 않는 선원이주노동자들의 노동! 노예노동이 아닌가!

9. 거의 모든 선원이주노동자들은 여권, 등록증, 통장을 핸드폰 사진으로 보관한다. 상담할 때 패스포트! 라고 말하면 전화기를 꺼낸다.

<발언문>

이한숙(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

강제노동, 인신매매의 지표, 어선원의 송출 수수료, 연근해 이주어선원 도입과 고용의 주무부처는 해양수산부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그 업무를 선주들의 단체인 수협중앙회에 위탁했다. 수협중앙회는 이를 다시 현지 송출업체와 계약으로 짝을 이룬 국내 관리업체에 위탁했다.

이들 업체들은 이윤이 목적인 민간영리기업이고, 아무런 감독이 없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이주어선원들에게 입국 전에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입국 후에도 각종 명목으로 중간착취를 하고 있다.

2011년 경, 4~5백만 원이던 인도네시아 어선원 송출 수수료는 10년 사이 서너배가 올라 1천5백만 원 안팎이 되었다. 베트남의 경우 이보다 더 많아서 2천만 원 가까이 되었다.

송출업체가 이런 거액의 현금과 함께 집문서, 땅문서를 추가로 받는 경우도 흔하다. 이주어선원들은 이를 돌려받기 위해 돈을 벌어서 나중에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국내 관리업체는 이주어선원들이 국내에서 일하는 동안 매월 3~5만 원 관리비를 받았었다. 이 관리비가 선원법 위반으로 문제제기를 하자 입국 전에 3년 치를 한 번에 받으면서 수수료는 더욱 올랐다.

그사이 약간 오른 어선원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분도 송출 수수료로 흡수되고 있다. 실제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가 입수한 송출업체와 어선원 간 송출계약서에는 임금이 오르면 송출업체에 정산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 거액의 송출 수수료를 마련하기 위해 이주어선원들은 자신과 친척, 지인 등 여러 명의 집과 땅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데 그 이자는 연 10~30%에 달한다. 이를 감당해야 하므로 실제 송출 수수료는 훨씬 높아진다.

이 빚은 이주어선원들을 꼼짝달싹할 수 없게 만든다. 어선원으로 일을 할 때도 그렇지 만 설령 이탈을 해서 다른 업종에서 일을 하더라도 빚에 묶인 강제노동의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송출업체들은 송출 수수료를 마련하기 위해 진 채무 외에 더 직접적으로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손해배상 계약을 체결해 두기도 한다. 이 계약서들은 이주어선원들이 이탈했을 때는 물론이고, 어떤 이유로든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고용주에게 순종하지 않거나, 태업이나 파업했을 때 등 갖가지 사유에 수천만 원 벌금을 물도록 하는 명백한 노예계약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거액의 빚에 묶이고, 노예계약서에 서명하고, 신분증과 급여통장을 압수당한 채 최저임금조차 차별받으며, 그래서 목숨 값조차 한없이 싼 이주어선원의 실태는 한국정부가 비준한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나, ILO 강제노동협약에 비추어 명백한 인신매매, 강제노동이다.

그런데 사법부가 그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이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떤 국가인 걸까요?

<발언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박영아 변호사

외국인 노동자를 최저임금을 비롯한 법정근로조건에서 제외하자는 요구는 새롭지 않다. 그동안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끈질기게 제기되어 왔다. 소위 단순노무를 위한 취업비자 제도가 도입된 초기에 “산업연수생”이라는 명칭을 부여하며 노동자로서의 지위조차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역사도 있다. 다만 당시에도 적어도 육상에서 고용된 산업연수생에 대해 최저임금만큼은 적용해왔다. 최저임금에서 제외하자는 요구는 최근 가사노동자와 관련 다시 나오기도 했지만, 헌법과 법률 그리고 한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협약(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LO 협약 제111호 등)에 위반됨이 명백하기에 본격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다.

그런데 한국 땅에서 일하면서도 국적을 이유로 최저임금 차별을 받아온 노동자들이 실제로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바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이주선원들이다. 그동안 주목을 받지 않은 것 또한 이들이 처한 상황의 열악함에서 기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이주선원에게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임금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선원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근로조건을 수호해야 하는 책무를 내팽개쳐 왔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이 되어서야 2026년까지 최저임금 차별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어선원에 대한 최저임금 차별이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행정부만도 못한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주선원에 대한 최저임금 차별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드는 것은 이주선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계약기간이 다소 짧고, 이주선원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선주는 통상적으로 이주선원의 숙식비 내지 본국 귀국 시 송환비용을 부담하므로 임금 산정 시 비용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원법이 근로기준법에 대해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은 장기간 배에 승선해서 근무하는 업무특성에 기인한 것이지, 국적에 따른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게다가 선원법은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6조를 준용하고 있다. 외국인고용법은 이주노동자의 해외 모집과 국내 업체 알선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법으로 선원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이주선원들의 모집과 알선을 달리 규율하겠다는 것이지, 한국인 선원과 외국인 선원을 차별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계약기간이 짧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점 또한 최저임금을 차별하는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선원 최저임금 고시에 따르면 숙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계약서상 선주가 귀국시 송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 역시 최저임금을 차별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해외인력을 도입은 중간착취와 인신매매를 수반할 위험이 매우 높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집 및 알선 수수료와 관련 비용을 노동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 것이 국제노동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이다. 어선원 취업비자로 오는 이주선원들이 체결하는 표준근로계약서상 송환비용을 선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

데 이를 이유로 다시 최저임금을 차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그러한 취지를 아예 무시하는 것이다. 현재 유사한 사건들이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들 재판부들은 이번 고등법원 판결 결과를 기다린다고 사건 진행을 안 하고 있었는데,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던 사건의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나오고도 다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한 상황이다. 대법원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